

#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중 세제부문, 무엇을 담았나?

(재정경제부. 2006. 9)

정부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지적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6.9.28.에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대 부문에 걸쳐서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세제부문에서는 기업과세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크게 창업 및 투자활성화 방안,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세합리화, 불복절차 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목차

### I.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1. 유한책임회사제도 등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2.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특례 신설

### II.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세 합리화

1. 금융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2. 공동경비의 안분규정 합리화
3. 장내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시가 규정 명확화
4.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시 시가범위 유연화
5. 특수관계자간 자금 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의 합리화
6.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7. 접대비 범위의 합리적 보완

### III. 불복절차 개선

1.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경정청구제도 허용
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절차 개선
3.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합리적 정비

### IV. 징세행정 개선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세체납으로 관허사업의 제한시 사전통보제도 도입</li> <li>2. 관세 일괄납부업체의 관세환급절차 간소화</li> <li>3. 수출 이후 관세추징세액에 대한 환급신청기한 합리화</li> <li>4. 국세 환급절차의 개선</li> </ol> |
|---|

**V. 납세자 편의 제고**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및 절차의 단순화·합리화</li> <li>2. 흠택스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한 외국인등록절차 생략</li> <li>3. 기타</li> </ol> |
|---|

## I.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1. 유한책임회사제도 등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중장기 검토과제)

현 행	개선 방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유한책임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과세체계 정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적으로 현행 공동사업자 과세제도의 미비점 보완('06 소득세법 개정안)</li> <li>- 중·장기적으로 파트너쉽과세제도의 도입을 검토</li> </ul>

#### ■ 개선 이유

유한책임회사제도(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창업 및 활성화 지원

#### ■ 참 고

- 유한책임회사(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란, 사적자치가 보장되는 조합에 유한책임이 부여된 새로운 회사형태로서 법인 설립등기시 정관의 공증, 주금납입보관 증명서의 제출, 감사 선임 등이 면제되므로 기존의 상법상 회사에 비해 창업절차가 간소함.

### 2.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특례 신설('06 조특법 개정 예정)

현 행	개선 방안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수령시점에 선과 세</li> </ul> <p>* 연구개발 정부출연금 기술개발촉진법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의한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p>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특례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 익금불산입하고, 사용시점에 익금산입하는 특례 규정 신설</li> </ul>

## ■ 개선 이유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수령시점에 전액 선과세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례 신설

## ■ 참고

### ▪ 개선 전·후 효과 비교

☞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으로 2005년에 10억원을 수령한 후,  
2005년에 4억원을 지출하고 2006년에 6억원을 지출한 경우

현 행	2005년		2006년		개선 방안	
익금	10억원		-		2005년	2006년
손금	△4억원		△6억원		익금	4억원
과세소득	6억원		△6억원		손금	△4억원

## II.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세 합리화

### 1. 금융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06 법인령 개정 예정)

현 행	개선 방안
<p><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이자상당액을 차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회사의 차입금이자상당액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li> </ul>	<p><input type="checkbox"/> 아래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차입금 이자상당액의 차감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조달금리*이상의 조건으로 대여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 배제, 단, 조달금리 미만을 받는 경우는 세제상 불이익 유지</li> </ul> <p>* 조달자금을 즉시 대여시 : 당해 조달금리 조달자금을 운용후 대여시 : 가중평균차입이자율</p>

### ■ 개선 이유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자회사에 대여하는 것은 고유업무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이자 상당액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함

### 2. 공동경비의 안분규정 합리화('06 법인령 개정 예정)

현 행	개선 방안
<p><input type="checkbox"/> 공동광고선전비의 안분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의 경우 : 출자금액 비율</li> <li>◦ 기타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광고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 제외, 특정제품은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li> <li>- 국내광고 : 국내매출액(특정제품은 당해 제품 매출액)</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공동광고선전비의 안분기준의 다양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좌 동&gt;</li> <li>◦ 기타의 경우 : 다양한 기준* 중 선택 적용 할 수 있도록 허용. 단, 한번 선택한 기준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기간 변경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원가, 영업이익, 종업원수 또는 쌍방의 약정에 따른 기준 등</li> </ul> </li> </ul>

### ■ 개선 이유

다양한 공동광고 형태에 불구하고 매출액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광고

효과 수혜배분의 경제적 실질의 미반영) 해소

### 3. 장내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시가 규정 명확화('06 법인령 개정 예정)

현 행	개정 방안
<p><input type="checkbox"/> 장내 거래 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한 명문 규정 부재</p> <p>단, 재경부 예규에 의해, 거래소 시장의 종가로 평가되고 할증평가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함(재법안46012-110,2001. 6. 5, 재법안-67, 2006.1.24)</p>	<p><input type="checkbox"/> 장내 거래 상장주식의 시가 규정을 명문화(내용은 재경부 예규와 동일)</p>

#### ■ 개선이유

장내 거래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에 대한 재경부 예규가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및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에 명확히 규정

### 4.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시 시가범위 유연화('06 법인령 개정 예정)

현 행	개선 방안
<p><input type="checkbox"/> 단일의 시가 적용</p> <p>◦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가’는 단일가액임</p>	<p><input type="checkbox"/> 시가를 일정 범위내에서 인정</p> <p>◦ 시가를 일정 범위*내에서 인정</p> <p>*예를 들면, 거래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 5%’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은 경우 당해 거래를 정상가으로 인정</p>

#### ■ 개선 이유

부당행위계산을 판단시에 시가를 단일가액으로 엄격 적용하여 거래가와 미미한 차이가 있어도 부당행위로 간주되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도입 이유인 실질과세원칙을 저해

### 5. 특수관계자간 자금 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의 합리화('06 법인령 개정 예정)

현 행	개선 방안
<p>□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 시가로 보는 이자율            (원칙) 당좌대출이자율(9%)            (예외)</p> <p>①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            ②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가중 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경우 당해 이자율</p>	<p>□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도록 함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예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계산대상에서 제외            ** 차입금이 없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만 존재</p>

## ■ 개선 이유

특수관계자간 자금 대여시 대여법인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도록 개선

## 6.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06 법인규칙 개정 예정)

현 행	개선방안
□ 리스회계기준의 개정내용 미반영	<p>□ 금융리스 분류기준의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용성 없는 자산 리스시 금융리스로 분류</li> </ul>
□ 지급이자로 처리하는 연지급수입의 범위가 기업회계와 상이	<p>□ 기업회계와 일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nker's Usance이자(현재도 세무상 지급이자 처리) 뿐만 아니라 D/A이자 및 Shipper's Usance 이자도 지급이자로 처리하도록 하여 기업회계와 일치</li> </ul>
□ 용역매출의 진행율 산정시 원가기준법만 협용  • 진행기준으로 용역매출 귀속시기를 판단시 작업진행률을 공사원가발생액만으로 산정	<p>□ 용역매출의 진행율 산정 방법의 다양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기준법 뿐만 아니라 투입량기준법 및 산출량기준법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협용</li> </ul>

## ■ 개선이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세무조정의 부담을 경감

### 7. 접대비 범위의 합리적 보완('06 법인령 개정 예정, 기발표)

현 행	개선 방안
<p>□ 접대비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광고선전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 등이라 하더라도 특정 고객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취급</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특정고객의 경우라 하더라도 1인당 연간 3만 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비 인정</li></ul>

## ■ 개선이유

소액 광고선전비의 경우 판매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경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III. 불복절차 개선

### 1.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경정청구제도 허용('06 국기법 개정 예정)

현 행	개선방안				
<p>□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거주자에 한해서만 허용</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도 경정청구권 허용</li></ul> <p>&lt;경정청구 대상소득&gt;</p> <table border="1"><thead><tr><th>비거주자</th><th>외국법인</th></tr></thead><tbody><tr><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선박·항공기 임대소득</li><li>◦ 사업소득</li><li>◦ 인적용역소득</li><li>◦ 근로소득</li><li>◦ 퇴직소득</li></ul></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선박·항공기 임대소득</li><li>◦ 사업소득</li><li>◦ 인적용역소득</li><li>◦ 사용료소득</li><li>◦ 유가증권 양도소득</li></ul></td></tr></tbody></table>	비거주자	외국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선박·항공기 임대소득</li><li>◦ 사업소득</li><li>◦ 인적용역소득</li><li>◦ 근로소득</li><li>◦ 퇴직소득</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선박·항공기 임대소득</li><li>◦ 사업소득</li><li>◦ 인적용역소득</li><li>◦ 사용료소득</li><li>◦ 유가증권 양도소득</li></ul>
비거주자	외국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선박·항공기 임대소득</li><li>◦ 사업소득</li><li>◦ 인적용역소득</li><li>◦ 근로소득</li><li>◦ 퇴직소득</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선박·항공기 임대소득</li><li>◦ 사업소득</li><li>◦ 인적용역소득</li><li>◦ 사용료소득</li><li>◦ 유가증권 양도소득</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소득</li> <li>◦ 유가증권 양도소득</li> </ul>	
--	--	--

### ■ 개선이유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도 허용함으로써 권리구제 강화

### 2.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절차 개선('06 조특령 개정 예정)

현 행	개선방안
<input type="checkbox"/>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시 소관부처의 판단만으로 감면 여부 결정통지</li> </ul>	<input type="checkbox"/> 조세감면 결정전에 소명기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기술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재검토하는 절차를 제도화</li> </ul>

### ■ 개선이유

고도기술사업의 판정에 있어 객관성 제고

### ■ 참고

#### ▪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조세감면결정 절차 개선안

재정경제부에 조세감면 신청 → 재정경제부는 기술소관부처에 검토요청 → 해당부처는 기술검토후 의견통보 → 부정적 의견일 경우 민원인에게 소명기회 제공 → 민원인이 일정기한내 소명자료 제출시 해당부처에 재검토 요청 → 해당부처는 재검토 후 의견통보 → 재정경제부가 조세감면 여부 결정

### 3.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합리적 정비('06 국세기본법 개정예정, 기발표)

현 행	개선방안
<input type="checkbox"/> 도달주의에 의한 청구기한의 판단	<input type="checkbox"/> 발송주의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하여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과세관청에 도달하면 청구기간 후에 청구된 것으로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청구기간 후에 과세관청에 도달하여도 청구기간내에 청구된 것으로 인정</li> </ul> <p><input type="checkbox"/> 지역결정 기간에 대한 가산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정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일(청구일부터 30일내) 이후의 지역결정기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50% 감면</li> </ul>
---	---

### ■ 개선이유

발송주의로의 전환을 통해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과세관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 통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

## IV. 징세행정 개선

### 1. 국세체납으로 관허사업의 제한시 사전통보제도 도입('06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예정)

현 행	개선방안
<p><input type="checkbox"/> 국세체납으로 인한 관허사업의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서장은 국세체납자에 대하여 그 체납세금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관허사업 제한 가능</li> </ul>	<p><input type="checkbox"/> 관허사업의 제한 전에 체납자에게 사전사전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허사업 제한시 체납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보</li> </ul>

### ■ 개선이유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위해 관허사업의 제한으로 국세체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최소화

**2. 관세 일괄납부업체의 관세환급절차 간소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 예정)**

현 행	개선방안
<p><input type="checkbox"/> 관세 일괄납부업체에 대한 관세환급금 정산 신고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sup>*</sup>는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정산하고 정산결과를 신고하여야 함</li> </ul> <p>* 관세 일괄납부(일정기간동안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의 적용을 신청하여 세관장에게 승인을 얻은 업체</p>	<p><input type="checkbox"/> 관세 일괄납부업체에 대한 관세환급금 정산 신고 절차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이 환급금을 직접 정산하여 관세 환급</li> </ul>

■ 개선이유

징세절차의 단순화를 통해 납세자 편의 제고

**3. 수출 이후 관세추징세액에 대한 환급신청기한 합리화((‘0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 예정)**

현 행	개선방안
<p><input type="checkbox"/> 관세추징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분에 대해 관세를 환급받는 수출업자가 원자재 수입시 품목분류 등의 차오로 관세를 과소납부한 후 관세추징을 받는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 수리시점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li> </ul>	<p><input type="checkbox"/> 관세환급 신청기한 기산일의 합리적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이후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관세환급신청기한의 기산일을 관세추징시점으로 함</li> </ul>

■ 개선이유

수출이후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신청기간의 경과로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

#### 4. 국세 환급절차의 개선('06 집행예정)

현 행	개선방안
<input type="checkbox"/> 대리인에 의한 환급금 현금 지급 <sup>*</sup> 시 필요 서류와 절차가 많음  * 현행 환급금 지급방법 -계좌환급:본인 신고계좌 있는 경우 계좌로 입금 -현금지급:본인 및 위임대리인 확인한 후 지급	<input type="checkbox"/> 위임여부 확인 없이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정환급문제 발생소지 있으므로 현행 서류와 절차는 유지하되, 대안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급금 발생시 과표신고서에 본인의 환급계좌를 기재하거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li> <li>◦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적극적인 본인 계좌 확인으로 계좌입금</li> </ul>

#### ■ 개선이유

과세관청이 정확하고 원활한 국세환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 편의도모

### V. 납세자 편의 제고

#### 1.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및 절차의 단순화·합리화('06 부가가치세 개정 예정)

현 행	개선방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면세사업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전용시 매입세액공제 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초 취득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li> </ul>
<input type="checkbox"/> 사업폐지시 잔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폐업시</li> </ul>

<p>는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출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li> </ul> </li> <li><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 가능</li> </ul> </li> </ul>	<p>잔존재화의 과세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출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checked="" type="checkbox"/> ERP에 보관한 신용카드거래정보로 매입세액 공제 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자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거래정보를 ERP로 보관하여도 매입세액공제 가능</li> </ul> </li> </ul>
---	---

## ■ 개선이유

-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및 절차를 단순화·합리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공

## 2. 흠택스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한 외국인등록절차 생략('06 집행예정)

현 행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국인의 흠택스서비스 이용시 사전 외국인 등록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이 흠택스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현금영수증카드 발급신청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먼저 등록하여야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등록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직접 법무부(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등록자료를 제출받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구축</li> </ul>

## ■ 개선이유

외국인의 흠택스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 ■ 참고

- 향후 전자신고시스템의 개발로 월별 조기환급,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전자신고제 도입예정

### 3. 기타

- (1) 세법상 규정된 각종 서식을 대상으로 간소화 추진(중장기 검토과제)
- (2) 수입화물 처리시간(평균 : 4.5일)의 표준편차를 단축하고 통관소요처리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업자의 수입물류 흐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06 집행예정)
- (3) 선진 위험관리기법 도입을 통한 수입화물 통관 절차 간소화('06 집행예정)